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br>람 | 기관위원장 |
|        |       |

제1188호 2016. 7. 4(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5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6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 열람 ·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1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9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재울로 56의 30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부여(변경)사유 | 도 로 명<br>고 시 일 | 도 로 명<br>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 1. 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7-01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9-2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56 (가좌동)                  | 2009-07-06 | 가재가 많은 개울/시내를 의미하며, 가좌동의 어원이 된 말을 인용하여 제명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3-15, 33-17, 33-16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23번길 16-12 (마전동)           | 2013-07-30 |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3-20, 33-10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23번길 16-2 (마전동)            | 2013-07-30 |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3-3, 33-18, 33-4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23번길 16-7 (마전동)            | 2013-07-30 |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5-2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2길 21 (불로동)             | 2008-12-31 |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
| 6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7-7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29-10 (오류동)              | 2009-09-22 | 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                   |    |
| 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43-1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45번길 8-23 (경서동)             | 2009-09-22 |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2-2                  |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29-56 (경서동)              | 2009-09-22 |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    |
| 9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8-1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2로 24 (오류동)                  | 2012-10-25 | 보듬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    |
| 10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2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2 (경서동)              | 2013-07-30 |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1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3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4 (경서동)              | 2013-07-30 |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2 |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273-1, 273-36, 273-19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18 (급곡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2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1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4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3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3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5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4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3-1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6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5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5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7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6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7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8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27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17-1 (가좌동)           | 2009-07-10 |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9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19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63 (석남동)               | 2015-11-13 | 북항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    |
| 20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0, 111-62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19 (석남동)              | 2009-07-06 |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1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5-4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3로 7 (오류동)                  | 2012-10-25 | 우리구 해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세번째 도로  |    |
| 22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6-1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7-9 (경서동, 반안프라자 2차) | 2012-03-30 |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8-2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7-13 (경서동)         | 2010-11-11 |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
| 24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24-1 (경서동)           | 2012-03-30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5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3 (경서동)             | 2012-03-30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0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7-1 (경서동)           | 2012-03-30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7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0-2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13 (경서동)             | 2012-03-30 |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8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1-8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안길 6 (당하동)               | 2008-12-31 | 청마로5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9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7.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송학로 503외 4건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도로명주소<br>폐지사유 |
|------|---------|--------------|---------------|
|      | 별 도 열 램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6-7-1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8-7  | 승학로 503       | 2016.06.14 | 건물 멸실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5-17 | 가정로261번길 16   | 2016.06.17 | 건물 멸실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5-9  | 가정로261번길 16-1 | 2016.06.17 | 건물 멸실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5-12 | 가정로261번길 14-1 | 2016.06.17 | 건물 멸실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5-15 | 가정로261번길 14   | 2016.06.17 | 건물 멸실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95호

##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공공청사, 사업명:서구청 정문 경비동 이전 재배치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7. 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공공청사(서구청 수위실) 증축에 따른 연면적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 서구청 정문 경비동 이전 재배치 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     | 대지면적(전체)  | 건축면적(수위실) | 연면적(수위실) | 비 고            |
|-----|-----------|-----------|----------|----------------|
| 당 초 | 14,219.5㎡ | 22.28㎡    | 22.28㎡   | 수위실 멸실 후<br>증축 |
| 변 경 | 14,219.5㎡ | 34.74㎡    | 32.94㎡   |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6.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 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고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 관계 |    |
| 1   | 인천 서구 심곡동 | 244 | 대   | 14,219.5 | 인천광역시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 -     | -   | -     |    |
|     |           |     |     |          | 인천 서구 |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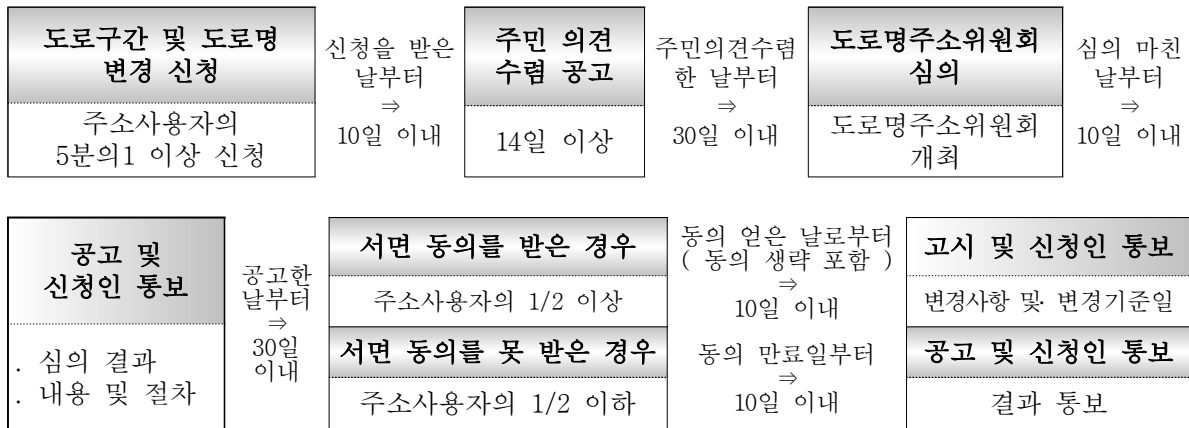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일 : 2016. 7. 1.
-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 연번 | 도로 구분 | 예비도로명      | 기 점 |       | 종 점 |        | 제 원   |        | 기초간격 (m) | 관할 행정구역 | 도로명 부여사유                                 |
|----|-------|------------|-----|-------|-----|--------|-------|--------|----------|---------|--|
|    |       |            | 읍면동 | 지번    | 읍면동 | 지번     | 길이(m) | 폭(m)   |          |         |  |
| 1  | 길     | 봉오재3로94번길  | 가정동 | 121-2 | 가정동 | 129-3  | 229   | 14.802 | 20       | 가정1동    | 봉오재3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길     | 봉오재3로110번길 | 가정동 | 459   | 가정동 | 441-38 | 137   | 24.901 | 20       | 가정1동    | 봉오재3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3  | 길     | 봉오재3로114번길 | 가정동 | 150-2 | 가정동 | 441-39 | 125   | 10.048 | 20       | 가정1동    | 봉오재3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4  | 길     | 염곡로464번길   | 가정동 | 127   | 가정동 | 441-38 | 209   | 25.635 | 20       | 가정1동    |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기점,종점의 지번은 종전지번으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완료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변경 조서

| 구분 | 도로 길이 (m) | 폭(m) | 위계 | 시작지점        | 끝지점     | 중심선 | 관할행정구역 (행정동) | 기초간격 (m) | 기초번호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구간 변경사유                           |
|----|-----------|------|----|-------------|---------|-----|--------------|----------|---------|---------|-----------------------------------|-------------------------------------|
| 현행 | 1,328     | 8    | 길  | 경서동 789     | 경서동 769 | 별첨  | 경서동 (검암경서동)  | 20       | 1 ↔ 132 | 경서로13번길 |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m 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 |                                     |
| 변경 | 1,329     | 8    | 길  | 경서동 산165-10 | 경서동 769 | 별첨  | 경서동 (검암경서동)  | 20       | 1 ↔ 134 | 경서로25번길 |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

**경서2구역 일부 도로명 변경(안)**



※ 시작지점 경서동 산165-10은 종전지번으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90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 사업명 : 검단2지구 소1-6호선 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사업
  - 【명칭】 검단2지구 소1-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1-6호선) L=109m, B=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 07. ~ 2016. 9.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자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91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시천2집단취락지구 소로3류2호선, 사업명: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류2호선)
  - 명칭 :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L=107m, B=6m, A=659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 점                  | 종 점              | 사용<br>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 소로  | 3  | 2  | 6         | 국지<br>도로 | 107       | 중로2-135<br>시천동172-10 | 소로3-1<br>시천동 산54 | 일반<br>도로 | -         | 2005. 4. 4. | 시천2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 용 지 조 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지적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
| 계  |     | 6필지   |    | 6,435  | 659 |                                  |                           |     |    |      |    |
| 1  | 시천동 | 148-1 | 전  | 1,421  | 3   | 유충규                              | 인천 서구 시천동 147             |     |    |      |    |
| 2  | 시천동 | 147-2 | 전  | 1,395  | 382 | 유충규                              | 인천 서구 시천동 147             |     |    |      |    |
| 3  | 시천동 | 147-3 | 대  | 465    | 34  | 유충규                              | 인천 서구 시천동 147             |     |    |      |    |
| 4  | 시천동 | 147-1 | 대  | 440    | 3   | 유풍택                              | 인천 서구 시천동 147-3           |     |    |      |    |
| 5  | 시천동 | 145-2 | 전  | 1,947  | 202 | 진주류씨이<br>관공후창진<br>(영월공)파<br>시천문중 | 인천 서구 아라로<br>105번길34(시천동) |     |    |      |    |
| 6  | 시천동 | 143-7 | 도  | 767    | 35  | 인천 서구                            |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    |      |    |

## ■ 지 장 물 조 서

| 연번 |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소유자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
| 1  | 시천동<br>147-2 | 계량기    | 청동       | 2EA | 유충규                                  | 인천광역시 서구<br>시천동 147       |    |
|    |              |        | 수도계량기    |     |                                      |                           |    |
|    |              | 채신주    | 콘크리트     | 1주  | KT                                   | -                         |    |
| 2  | 시천동<br>147-3 | 담장     | 블럭담      | 4m  | 유충규                                  | 인천광역시 서구<br>시천동 147       |    |
|    |              |        | H=1.8m   |     |                                      |                           |    |
| 3  | 시천동<br>145-2 | 채신주    | 콘크리트     | 1주  | KT                                   | -                         |    |
|    |              | 전력주    | 콘크리트     | 1주  | 한국전력                                 | -                         |    |
|    |              | 가건물    | 철골/천막    | 1동  | 진주류씨<br>이관공후<br>창진(영<br>월공)파<br>시천문중 | 인천 서구 아라로<br>105번길34(시천동) |    |
|    |              | 비닐하우스  | 철골/비닐하우스 | 4동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2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기금의 재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12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2,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매각대금(손실보상금 포함)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한다.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담당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총괄·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매각대금(손실보상금 포함)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한다.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담당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총괄·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라. 관계법령발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